

작물바이오텍연구소 규정

시행:2025.03.28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작물바이오텍연구소(Crop Biotech Institute, 이하 ‘본 연구소’라 한다) 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연구소는 농생명자원의 개발, 생산, 이용, 유전생명공학의 기초 및 응용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

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농생명자원 및 유전생명공학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
2. 학술정보의 교환 및 학술자료 편찬
3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

제4조(소재지)

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5조(조직)

- ① 본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 1. 연구소장
 2. 연구부소장
 3. 운영위원회
 4. 제1연구부 및 제2연구부
 5. 감사
- ② 각 부 또는 팀의 구성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연구소장)

-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.
- ②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「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부소장)

- ① 연구부소장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- ② 연구부소장은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장의 유고시에는 연구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 촉동

-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- 1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 - 2. 조직
 - 3. 제 규정의 개폐
 - 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 - 5. 연구소장 추천
 - 6. 연구원, 연구조원, 행정요원 등 임명
 - 7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연구부소장, 연구부장 2인, 간사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.
- ③ 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

제9조(연구부)

- ① 연구소는 산하에 다음 각호와 같은 연구부(팀)를 둘 수 있다.
 - 1. 제1연구부는 식량작물 및 유전생 명공학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한다.
 - 2. 제2연구부는 원예작물, 임목자원 및 유전생명공학의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한다.
- ② 각 연구부장은 연구소 구성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(구성원)

- ① 본 연구소에는 「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상임 연구원, 전문 연구원, 객원 연구원, 일반 연구원, 연구보조원, 행정요원 등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소 구성원의 구분 및 운영과 인사관리는 본교 「부설 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한다.

제11조(직무)

- ① 간사는 본 연구소의 운영사무를 관장하며,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- ② 감사는 연구소장이 임명하며, 본 연구소의 회계처리 업무 등을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연구부장은 해당 연구부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연구원의 활동을 지도·감독한다.
- ④ 연구원은 연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논문 발표 시 연구소 소속임을 명기한다.

제3장 재정 및 기타

제12조(재정)

본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.

제13조(집행)

본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.

제14조(회계)

- ① 재원에 따라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구분·운영하며, 교비 또는 대외과제·용역 수주 등에 따른 경비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.
- ②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- ③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.

제15조(보칙)

- ① 본교 「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.
- ② 연구소의 규정 및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본 연구소가 해산할 때 시설과 기 자재 등의 재산은 폐쇄 다음 달 내 본교에 귀속된다.

부칙

1. 본 규정은 2025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